

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(어업법인용)

※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5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0일		
신청인	성 명						
	주민등록지(신고거소지) 주소						
1. 일반현황							
①형태	[]영어로조합법인, 어업회사법인 ([]합명 []합자 []유한책임 []유한 []주식)						
②법인 현황	법인명		법인등록번호		사업자등록번호		
	전화번호		팩스		전자우편		
	설립연도						
	주사무소 소재지						
③대표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	전자우편		
	주소						
④구성원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직책	어업인 여부		
조합원, 사원, 주주의 인원수		[]조합원: 명, []준조합원: 명, []사원: 명, []주주: 명					
⑤어업현황 및 시설	어업 구분		어업 현황(품종·종류 등)		시설		
	해수면어업	정치망어업		어업종류:		구획면적(ha):	
		양식업			어류:		양식면적(ha):
					패류:		양식면적(ha):
					해조류:		양식면적(ha):
					기타:		양식면적(ha):
		마을어업		대표품종:		면허면적(ha):	
		어선 어업	근해 어업	어업종류:		어선 수(척):	
			연안 어업	어업종류:		어선 수(척):	
		구획어업		어업종류:		어선 수(척):	
	신고어업		어업종류:				
	내수면어업	양식업	어류:		양식면적(ha):		
			갑각류:		양식면적(ha):		
			기타:		양식면적(ha):		
		허가어업		어업종류:		어선 수(척):	
	신고어업		어업종류:				
	기타어업	관상어양식	대표품종:		생산면적(㎡):		
		소금제조업			생산면적(ha):		

6. 그 밖의 어업(정치망어업, 구획어업, 신고어업, 내수면어업, 관상어양식 및 소금제조업) 생산규모

면허 · 허가 · 신고 번호	㉔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	㉕지난해 생산 규모		㉖유통정보(비율, %)	
		생산량(kg)	생산금액(만원)	위·공판장 판매	기타

7.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

㉗성명	㉘교육기관	㉙교육과정명	㉚교육기간

8. 어업에 관련된 용자·보조금 등의 수령

㉛지원받은 정책사업명	㉜면적(㎡)	㉝톤	㉞총사업비(원)	정부보조금(원)	정부용자금(원)	해당연도

9.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

신청자	㉟인증종류	㊱소재지	㊲인증면적(㎡)	대표품종	㊳인증번호

10. 소득, 자산 및 부채 정보(작성 기준일: 전년도 12월 31일)

㊴어업 소득(만원)	㊵어업 외 소득(만원)	㊶자산(만원)	㊷부채(만원)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유의사항
※ 이 신청서는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·면장·동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※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는 등록·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.
※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전산시스템
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
신청인의 어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·임야대장, 건축물대장	
토지 등기사항증명서, 건물 등기사항증명서, 개별공시지가 확인서, 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	
소득금액증명	
어선, 어업인허가 및 양식업 관련 정보	수산정보시스템
수산물위판정보(판매, 중도매인, 위탁인 및 정산 관리 등) 관련 정보	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
유기식품의 인증 정보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	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

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, 임야대장, 건축물대장, 토지 등기사항증명서, 건물 등기사항증명서, 개별공시지가 확인서, 개별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		년	월	일
		년	월	일
	대표자			(서명 또는 인)
신청인	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			(서명 또는 인)
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)	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			(서명 또는 인)
	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			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1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합니다.)의 수산행정지원, 융자·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거부

2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·변경등록, 수산보조금 정보, 그 밖의 행정정보를 문자 메시지 및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거부

3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에 관련된 융자·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심사, 보조금 등의 부정·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거부

4.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할 세무서, 공공기관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, 종합소득, 복지 급여액, 면세유류 배정정보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[] 동의 [] 거부

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) 등록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,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융자·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행정지원 및 안내 서비스 제공, 다른 법률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		년	월	일
				(서명 또는 인)
신청인	대표자			(서명 또는 인)
(개인정보 이용·제공·활용 동의자)	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			(서명 또는 인)
	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			(서명 또는 인)
	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			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등을 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* 이 신청서에 작성한 어업경영정보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,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➔	접 수	➔	검토 및 확인	➔	등록부 작성	➔	등록·변경등록 확인서 발급
-----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-	---	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

지방해양수산청

작성방법

- ①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형태에 해당되는 []칸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 ②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, 법인등록번호,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 설립연도를 적습니다.
 - *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, 법인이 소유·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.
- ③란은 대표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.
- ④란은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어업인 5인 이상, 어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와 어업인 출자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직책, 어업인 여부 및 증빙서류(어업경영체 등록증명·어업인확인서·고용계약서)를 적습니다.
 - * 해당 법인의 조합원(또는 사원·주주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정관 및 조합원 명부 등)를 첨부합니다.
- ⑤란은 어업현황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전부 적습니다.
 - 1) 정치망어업은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종류 및 구획면적을 적습니다.
 - 2) 양식업(해수면 및 내수면)과 마을어업은 대표품종(아래 ㉔란 및 ㉔란의 작성 예시에 따른 대표품종을 말합니다)과 어장면적(양식면적 또는 면허면적)을 적습니다.
 - 3) 해수면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어업종류(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)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.
 - 4) 해수면 어선어업 중 연안어업은 어업종류(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)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.
 - 5) 해수면 중 구획어업은 어업종류(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)와 어선 수를 적습니다.
 - 6) 해수면 신고어업은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고, 내수면 신고어업은 「내수면어업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.
 - 7) 내수면 허가어업은 「내수면어업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어선 수를 적습니다.
 - 8) 관상어양식은 대표품종과 생산면적을 적습니다.
 - 9) 소금제조업은 생산면적을 적습니다.
- ⑥란은 양식업의 경영 형태를 자영 또는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자영 : 본인 소유의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
 - 임차 : 타인 소유의 어업권을 임차하여 수산물을 양식하는 형태
- ⑦란은 해당 양식업 면허·허가증 상의 어장면적을 적습니다.
- ⑧란은 실제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어장면적을 적습니다.
- ⑨란은 양식하는 어종을 적습니다. 이 경우 아래 ㉒란 및 ㉔란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.
- ⑩, ⑭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양식량을 적습니다.
- ⑪, ⑮, ⑯, ㉔, ㉔란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지난해 1년간(1. 1. ~ 12. 31.) 생산한 것을 적습니다.
- ⑫, ⑮, ㉔, ㉔란은 위탁·공판장을 통해 위탁 판매한 비율과 그 외 수집상, 직거래 등으로 판매한 비율을 적습니다.
- ⑬란은 양식하는 품종을 적습니다.
- ⑰란은 어선이 등록된 선적지를 적습니다.
- ⑱란은 동력 또는 무동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⑲란은 연안, 근해, 정치망 또는 내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㉒란은 선박원부에 등재된 톤수를 적습니다.
- ㉔란의 주요어종, ㉔란의 대표품종 또는 대표어종은 아래의 작성 예시에 따라 적습니다.
 - 작성 예시
 - 가. 양식업
 - 패류: 전복, 굴, 바지락, 고막, 홍합, 피조개
 - 해조류: 김, 미역, 다시마, 톳, 우렁쟁이, 미더덕
 - 어류: 새우, 돔, 넙치, 볼락, 복어, 전어
 - 나. 어선어업: 가자미, 갈치, 고등어, 꽁치, 넙치, 농어, 돔, 대구, 멸치 등
 - 다. 내수면어업: 장어, 쏘가리, 잉어, 송어, 다슬기, 미꾸라지, 자라
- ㉔란은 법인의 대표자, 조합원, 사원 또는 주주가 법인명의로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이수자의 이름을 적습니다.
- ㉔란은 교육을 시행한 기관명을 적습니다.
- ㉔란은 이수한 어업경영 관련 직업·전문 교육과정명을 적습니다.
- ㉔란은 교육 받은 기간을 연월일로 표시합니다.(예: 2016. 3. 8. ~ 2016. 5. 15.)
- ㉔란은 지원받은 수산사업 정책명을 적습니다.
- ㉔란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양식장 등이 있을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.
- ㉔란은 어선관련 지원 사업 등의 어선톤수를 적습니다.
- ㉔란은 자기부담금,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적습니다.
- ㉔란은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적습니다.
- ㉔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및 시설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㉔란은 인증과 관련된 양식장 등의 인증면적을 적습니다.
- ㉔란은 인증서상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.
- ㉔, ㉔란은 지난해 1년간 법인의 어업 소득 및 어업 외 소득을 각각 적습니다.
 - * 어업 소득: 어업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익, 어업 외 소득: 겸업소득, 임대료, 배당금, 이자 및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
- ㉔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인의 자산을 적습니다.
 - * 자산: 토지, 건물, 선박, 기계·기구, 금융자산, 미처분 수산물, 사용중인 어업용 자재 및 미사용 구입자재 등의 총액
- ㉔란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법인의 부채를 적습니다.
 - * 부채: 차입금, 미지급금 및 선수금 등